

영등포구의회
제170회 임시회

『경부선[국철1호선-노량진~당정] 지하화 추진
협의회 규약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2. 9. 13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專 門 委 員 朴 鍾 成

『경부선[국철1호선-노량진~당정] 지하화 추진 협의회 규약안』 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152호로 2012년 8월 30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
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경부선(국철1호선-노량진~당정) 지하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6개 지자체가
관련 내용을 상호 존중·준수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규약을
정하여 구의회 의결을 거치고자 제출됨.

3. 주요내용

가. 협의회 구성목적 및 명칭, 사무소의 위치를 규정함.

(안 제1조 ~ 안 제3조)

나. 협의회 구성 및 조직, 회의운영 및 기능 등을 명시함.

(안 제4조 ~ 안 제12조)

다. 실무협의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13조)

라. 협의회 운영에 따른 경비부담, 결의사항의 처리, 협의사항의
조정내용을 정함.(안 제14조 ~ 안 제16조)

4. 검토의견

- 본 규약안은 경부선(국철1호선-노량진~당정) 지하화사업이 국책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6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용역수행을 포함하여 행정적, 재정적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협의회를 구성, 규약을 체결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에 따라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제출된 규약안임.

- 주요내용을 보면
 - 협의회는 6개 지방자치단체장을 위원으로 하며 주관은 2년마다 순환제로 함.(안 제4조)
 - 회의운영 시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을 시 개최하도록 함.(안 제9조)
 - 협의회는 경부선(국철1호선-노량진~당정) 지하화 추진에 관한 각종 사항들을 협의함.(안 제10조)
 -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장은 회장소속 자치단체의 관련 실무과장 및 실무팀장으로 함.(안제13조)

- 그동안 경부선 국철1호선으로 인해 영등포구가 양분되어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철도주변 지역의 주민들은 소음과 먼지 등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, 경부선(국철1호선-노량진~당정) 지하화 추진을 위하여 영등포구를 포함한 6개 자치단체가 2012. 5. 3 공동협약식을 개최하였으며,

- 이번 규약안은 2013년도에 추진할 공동용역사업의 지자체별 용역비 분담액을 명문화하고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하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6개 자치단체 간 협약사항을 규약으로 정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5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 152조

나. 예산조치 : 협의회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편성 필요

관 련 법 령

■ 지방자치법

제152조(행정협의회)의 구성)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·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, 시·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·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>

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<개정 2008.2.29>